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92

발의연월일: 2025. 4. 24.

발 의 자:이소영・김한규・장철민

전용기 · 김태년 · 박지원

김원이 • 채현일 • 김기표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나, 이자소 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수익임에 반해,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이점이 있음. 이자 소득은 통상적으로 사전에 약정된 금리를 보장받고 일정액에 대해서 는 예금자 보호를 받는 안전한 소득이지만, 배당소득은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소득임.

또한 배당소득은 법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물로서 법인세 납부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금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배당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6조)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법인들의 배당성향은 평균적으로 26%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임. 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재벌구조와 지주회사체제, 중복상장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및 경영진들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음. 이들은 일반주주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배당보다는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급여수령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결국 저배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매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결국 투자자 역시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 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5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6호까지의"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로 한다.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배당성향이 100분의 35 이상인 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로서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14조제3항제5호의2에 따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율

- 1)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4
- 2)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 3)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

제155조의7제1항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3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	
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배
	당성향이 100분의 35 이상인
	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
	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u>「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u>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
	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로서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 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 9. (생략)

- ④ (생략)
- ⑤ 제3항제3호부터 <u>제6호까지</u> 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 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 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생략)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 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 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 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u>법인</u>
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변	<u> 받는</u>
배당소득	
6 <u>제5호까지 및</u>	제5
호의2의	
7. ~ 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5호</u> 끼	시.
제5호의2 및 제6호의	
 ⑥ (현행과 같음)	
- (1) (연행과 실름)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세129조(전신경구세뀰 <i>)</i> ①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 - 에 따른다.

1. (생략)

<신 설>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생 략)

<u>나.</u> (생 략) 3. ~ 8. (생 략) ② ~ ⑧ (생 략)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 제1한 원천징수 특례) ① 제127조 현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 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 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 -

1. (현행과 같음)
2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4조제3항제5호의2에
따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의 구분에 따른 세율
1)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
<u>0</u> 0분의 14
2)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
하인 경우: 100분의 20
3) 3억원 초과인 경우: 100
분의 25
<u>다.</u> (현행 나목과 같음)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
한 원천징수 특례) ①

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제1 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 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 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 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 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호다
<u>목</u>
② (현행과 같음)